

한국체육대학교 학보 발간에 관한 규정

제정 1999. 3.23. (규칙 제265호)

개정 2011. 8.31. (규칙 제562호)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보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학보의 발간방향) 학보의 발간방향은 다음과 같다.

1. 학생들의 수학에 필요한 정보와 학내 소식 보도
2. 학생들의 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양·학술 및 보충학습자료 제공
3. 학생들의 학문, 문예 활동을 지원하는 등, 학내 언론을 활성화함으로서 본 대학의 건전한 학풍진작과 올바른 비판정신 함양에 기여

제 3 조(기구) 학보의 발간을 위하여 주간 및 편집지도교수를 둔다.

제 4 조(주간) ①주간은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주간은 인사, 재정관리와 사업, 학보의 편집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총괄한다.

제 5 조(편집지도교수) ①편집지도교수는 주간이 겸임한다.

②편집부는 기획, 취재, 조사, 원고청탁 및 수합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③편집부 직원은 주간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편집부에는 보도, 문화, 학술, 행정업무와 학보 인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 및 기자를 둘 수 있다.

⑤전향의 기자는 1년간 수습기간을 거치게 할 수 있다.

제 6 조(학보발간위원회) ①학보발간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보발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주간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간이 된다.

③교수위원은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의 간사는 편집부 직원이 겸한다.

제 7 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기타 학보의 발간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 8 조(위원회의 소집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원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9 조(위원회의 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10조(경비) 학보발간 경비는 교비, 학생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회계연도) 학보발간 경비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학년도와 같다.

제12조(수당) 제7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편집지도교수 및 수습기자 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세부사항 제정 등)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(1999. 3.23 제265호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9. 3. 2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11. 8.31 제562호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